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515 발의연월일: 2023. 3. 9.

발 의 자: 박용진 • 윤영찬 • 김한규

이인영 · 송재호 · 이동주

김영배 · 전해철 · 전재수

이원택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, 치료 및 요양, 일시보호,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,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일정하게 존재함. 한편, 가해자의소년부 송치 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임.

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,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심문도 해야 하도록 정하고,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대리인 등에 한하여 심리를 공개하고

재판 방청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후 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16조제9항 및 제17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「소년법」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이 될 경우 법원은 「소년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「소년법」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.

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, 법원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~	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~	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「소		
	년법」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		
	한 사건이 될 경우 법원은 「소		
	년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대리		
	인 등이 원할 경우 「소년법」		
	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		
	고 재판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.		
제17조의2(행정심판) ① ~ ③ (생	제17조의2(행정심판) ① ~ ③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		
	2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와 집		
	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, 법원은		
	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		
	들어야 한다.		